

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봉양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35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10월 16일
발 의 자: 봉양순 의원(1명)
찬 성 자: 강동길, 곽향기, 김경훈,
김성준, 김재진, 남궁역,
박승진, 박춘선, 박칠성,
송도호, 이민옥, 이병도,
이소라, 이영실, 이은림,
임규호, 임만균, 전병주,
정준호, 최재란 의원(20
명)

1. 제안이유

- 현재 보호수로 지정하는 일반적인 노목, 거목, 희귀목 등에 한정하지 않고 역사적, 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나무 중에서도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역사적·학술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함(안 제3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산림보호법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노목”을 “역사적·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보호수의 지정·고시) ① 시 장은 <u>노목</u>(老木), 거목(巨木), 희귀 목(稀貴木)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 할 가치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(이 하 “보호수”라 한다)로 지정하여 야 한다.</p> <p>② ~ ⑧ (생략)</p>	<p>제3조(보호수의 지정·고시) ① --- -- <u>역사적·학술적 가치 등이 있 는 노목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~ ⑧ (현행과 같음)</p>

문서 번호

2023101300000020

비대상 사유서

요청인 : 봉양순 의원

담당 : 오희선 과장
이정수 팀장
김지혜 주무관

접수일 : 2023.10.13.

회신일 : 2023.10.16.

내용문의 : 02-2180-7953

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

목 차

1. 판단 근거
2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
재정분석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(보호수의 지정·고시)제1항 중 “노목”을 “역사적·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”으로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희선
추계세제팀장	이정수
주 무 관	김지혜

☎ 02-2180-7953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.